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개정 전** | **개정안** | **비 고** |
| **제1장 총 칙** |  |
| **제2조** **(목적)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** 36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| **제2조** **(목적)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**36. 전문 소방공사업37. 전기차 충전사업38. 의료기기 연구개발, 제조, 판매 및 유통, 렌탈서비스업39.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부대사업 및 서비스업40. 가정용 식물 재배기 사업4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| **사업의 목적 추가** |
| **제3조 (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)**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| **제3조 (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)**① 본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내에 둔다 | **본점 소재지 변경** |
| **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**1.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| **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**1.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| **전환사채의 범위 변경** |
| **제20조 (소집지)**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| **제20조 (소집지)**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, 출장소, 사무소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| **주주총회 소집지 변경** |
| 부칙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칙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단, 제3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변경은 본점 이전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 | **시행일 변경** |